

## 【 9 】 양주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제출년월일 2002. 4.

제 출 자 양 주 군 수

### 1. 개정이유

공인을 전자문서, 무인민원발급기 및 인증기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현행 운영하지 않는 불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함.

### 2. 주요골자

- 가. 현재 운영하고 있지 않은 중계민원에 대한 사항을 삭제함(안 제2조제5항)
- 나. 전자문서, 인증기, 무인민원발급기에서도 직인을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안 제3조의2 및 제3조의3)
- 다. 전자문서에 사용하는 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6조의2)

양주군조례 제 호

## 양주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양주군공인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항을 삭제한다.

제3조의2 및 제3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전자이미지공인) 군수, 사업소장, 읍·면장은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을 가질 수 있으며, 전자이미지공인은 공인을 전자입력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3조의3(인증기, 무인민원발급기의 공인) 실과소장, 읍·면장은 군수의 승인을 얻어 민원증명발급용 공인부착인증기 및 무인민원발급기에 공인을 사용할 수 있다.

제6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하는 기관은 전자이미지공인을 재등록한 경우 즉시 사용중인 전자이미지공인을 삭제하고, 재등록한 전자이미지 공인을 전자입력하여야 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 및 관리) ①전자이미지공인을 총무과에 등록 (재등록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②총무과장은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하는 경우에 일반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 공인 등록대장의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컴퓨터 화일에 등록한 후 이를 출력하여 전자이미지 공인 등록대장의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제9조제1항중 공인 다음에 "(전자이미지공인)"을 제외한다"를 삽입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 대비표 예시문

현 행	개 정 안
제2조(공인의 종류 및 비치사용)①~④(생략)  ⑤군수와 읍·면장(출장소장)권한에 속하는 민원사무중 주민편의 도모를 위하여 팩시밀리를 통한 단순한 제증명 발급사무일부를 군수와 읍·면장(출장소장)간에 상호 위·수탁하여 처리할 경우, 그 사무처리에 필요한 군수와 읍·면장(출장소장)의 공인을 비치 사용할 수 있으며 그 공인을 사용할 때에는 소속기관의 「주민원전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2조(공인의 종류 및 비치사용)①~④(현행과 같음)  <삭제>
<신설>	제3조의2(전자이미지공인) 군수, 사업소장, 읍면장은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을 가질 수 있으며, 전자이미지공인은 공인을 전자입력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신설>	제3조의3(인증기, 무인미원발급기, 공인) 실과소장, 읍·면장은 군수의 승인을 얻어 민원 증명 발급용 공인부착인증기, 무인미원발급기에 공인을 사용할 수 있다.
제6조(공인의 신조, 개각)①~②(생략)  <신설>	제6조(공인의 신조, 개각)①~②(현행과 같음)  ③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하는 기관은 전자이미지공인을 재등록한 경우 즉시 사용증인 전자이미지공인을 삭제하고 재등록한 전자이미지공인을 전자입력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신설>	제6조의2(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 및 관리) ①전자이미지공인을 총무과에 등록(재등록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②총무과장은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하는 경우에 일반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 등록대장의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컴퓨터화일에 등록한 후 이를 출력하여 전자이미지 공인 등록대장의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제9조(공고)①공인을 신조하거나 개인, 폐인하였을 때에는 이를 군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②(생략)	제9조(공고) ①공인(전자이미지공인을 제외한다)을 ----- ②(현행과 같음)

제3편 총무 제4장 서무 양주군공인조례

## 양주군공인조례

[1970. 12. 5]  
[조례 제214호]

개정 1971. 6.18 조례 제 290호	개정 1984. 2. 1 조례 제 935호
개정 1971. 6.26 조례 제 291호	개정 1985. 9.30 조례 제1051호
개정 1971. 8. 9 조례 제 299호	개정 1985.12.31 조례 제1093호
개정 1972. 5.22 조례 제 333호	개정 1988. 4.30 조례 제1196호
개정 1973. 3.29 조례 제 353호	개정 1988.11.30 조례 제1229호
개정 1973. 6.29 조례 제 367호	개정 1989. 6.21 조례 제1276호
개정 1974.11.28 조례 제 388호	개정 1992. 9. 9 조례 제1432호
개정 1975. 5. 1 조례 제 425호	개정 1993. 1. 9 조례 제1445호
개정 1975.10.13 조례 제 435호	개정 1993. 4.16 조례 제1450호
개정 1977. 2. 8 조례 제 489호	개정 1993. 8. 6 조례 제1457호
개정 1977. 2.12 조례 제 501호	개정 1995. 4.13 조례 제1529호
개정 1977. 7.30 조례 제 558호	개정 1996. 9.23 조례 제1578호
개정 1977.10.27 조례 제 564호	개정 1998.10.14 조례 제1684호
개정 1984. 2. 1 조례 제 929호	(양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주군 공인(사업소 그 밖에 소속기관의 장 및 그 기관장의 보조기관과 공무원의 공인을 포함한다.)의 규격, 판수방법, 공고 요령과 그밖의 공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인의 종류 및 비치 사용) ①공인은 기관의 장의 명의로 발송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직인과 의결기관, 자문기관, 기타 합의체기관의 청인으로 구분한다.

②군수, 읍·면장, 사업소장, 소속기관의 장, 보조기관 및 회계관계 공무원은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인을 비치 사용한다.

③군수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사업소장 또는 소속 기관장에게 내부 위임하여 처리할 경우, 그 사무처리에 필요한 군수의 공인을 비치 사용할 수 있으며 그 공인을 사용할 때에는 사업소장 또는 소속기관장 전용 임을 별표 2와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④군수는 창구 즉결민원서류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민원실전용”공인을 비치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원실전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 제3면 총무 제4장 서무 양주군공인조례

만,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민원업무의 분야별 전용 공인을 비치 사용할 수 있다.

⑤군수와 읍·면장(출장소장)권한에 속하는 민원사무중 주민편의 도모를 위하여 팩시밀리를 통한 단순한 제증명 발급사무일부를 군수와 읍·면장(출장소장)간에 상호 위·수탁하여 처리할 경우, 그 사무처리에 필요한 군수와 읍·면장(출장소장)의 공인을 비치 사용할 수 있으며, 그 공인을 사용할 때에는 소속기관의 “증계민원전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 3 조(회계 관계의 공인) 이 조례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이라 함은 징수관, 경리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채무관리관, 지출원, 출납원과 그 대리자 및 분임자의 공인을 말한다.

제 4 조(글씨 및 규격) ①공인의 글씨는 한글전서체로 가로써야 하며, 그 규격은 별표 1과 같다.

②제1항 규정에 불구하고 양주군수인을 전산처리되는 제세공과금고지서 발급용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그 원형을 가로, 세로 각 1.5cm로 축소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 5 조(각인) ①공인에는 관서명과 직명을 새겨야 한다. 다만, 회계관계 공무원의 공인에는 회계명을 함께 새길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출납원의 직명은 수입금 출납원, 일상경비 출납원, 세입 세출의 현금출납원, 물품 출납원으로 구분하여 새겨야 한다.

제 6 조(공인의 신조, 개각) ①공인 신조, 개각은 총무과장이 이를 새겨 교부 한다.

②사업소장 또는 그 소속 기관의 장이나 회계관계 공무원이 공인을 신조 또는 개각코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총무과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소장의 보조기관으로서 공인을 가지고자 할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7 조(공인대장) 총무과장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공인대장을 작성하여 공인을 신조, 개각 또는 폐기할 때마다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여야 한다.

제 8 조(인영의 보존) 총무과장은 매년 2월 1일 현재의 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3호 서식의 인영부에 의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 9 조(공고) ①공인을 신조하거나 개인, 폐기하였을 때에는 이를 군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관보 또는 도보에 게재된 각 기관별 인영부를 훼손되지 않도록 별책으로 보관하고 업무에 참고하여야 한다.

제10조(신조 및 개각 인영보고) 공인을 신조 또는 개각한 때에는 별지 제4

## 제3면 총무 제4장 서무 양주군공인조례

호 서식에 의하여 2부를 익월 10일까지 도지사에게 제출 인영부에 등재를 의뢰하여야 한다.

제11조(공인의 폐기) ①공인의 개각, 기관의 폐지등으로 공인을 폐기코자 할 때에는 그 공인을 총무과장에게 지체없이 인계하여야 한다.

②총무과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수받은 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5호 서식의 폐인대장에 등재하고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공인은 소각 처분하여야 한다.

제12조(공인의 사고보고등) 공인 관수자는 공인의 도난, 분실 또는 기타 변조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별표 제6호서식에 의한 공인사고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공인 관수자) 공인의 관수자는 군수가 임명한다. 다만 보조기관과 회계관계 공무원의 공인은 각각 그 직에 임명된 자가 관수자가 된다.

제14조(관수방법) 공인은 항상 견고한 용기에 넣어 두어야 하며 근무시간, 종료후 또는 공휴일에는 봉인하여 당직책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15조(공인의 날인) ①공인의 날인은 공인 관수자가 결재문서와 시행문을 대조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

②공인의 날인 위치는 그 문서를 발행하는 행정기관의 장의 명의표시 글자가 공인의 가운데에 오도록 찍어야 한다.

다만, 등·초본등 민원서류를 발급하는 직인의 경우에는 발급기관의 장의 명의표시의 오른쪽 여백에 찍을 수 있다.

제16조(규칙) 공인 사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1970.12. 5 조례 제214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의 공인은 이 조례에 의하여 조제한 것으로 본다.

③(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1961. 10. 1 양주군 조례 제1호, 제41, 89, 125호로 개정한 양주군 공인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 부 칙 (1971. 6.18 조례 제290호)

이 조례는 1971. 5.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1971. 6.26 조례 제291호)

이 조례는 1971. 6. 1일부터 시행한다.

제3편 총무 제4장 서무 양주군공인조례

부 칙 (1971. 8. 9 조례 제29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72. 5.22 조례 제33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73. 3.29 조례 제35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73. 6.29 조례 제367호)

이 조례는 1971. 7.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74.11.28 조례 제388호)

이 조례는 1974. 12.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75. 5. 1 조례 제425호)

이 조례는 1971. 6.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75.10.13 조례 제435호)

이 조례는 1975. 9.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77. 2. 8 조례 제489호)

이 조례는 1977. 1.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77. 2.12 조례 제5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77. 7.30 조례 제 558 호)

이 조례는 1977. 8.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77.10.27 조례 제 564 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양주군 공인조례(조례 제558호 1977. 7. 30)는 이를 폐지 한다.

## 제3면 총무 제4장 서무 양주군공인조례

③(경과조치) 부칙 제2항의 폐지조례에 의하여 새긴 공인은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새긴 것으로 본다. 다만, 제4호 별표에 규정한 규격에 맞지 않은 공인은 1977. 12. 31까지 개각 하여야 한다.

부 칙 (1984. 2. 1 조례 제 929 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4. 2. 1 조례 제 935 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5. 9.30 조례 제1051호)  
이 조례는 1985. 10.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5.12.31 조례 제10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8. 4.30 조례 제1196호)  
이 조례는 1988. 5.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8.11.30 조례 제122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9. 6.21 조례 제12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2. 9. 9 조례 제14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3. 1. 9 조례 제14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3. 4.16 조례 제145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편 총무 제4장 서무 양주군공인조례

부 칙 (1993. 8. 6 조례 제14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5. 4. 13 조례 제152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6. 9. 23 조례 제15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8. 10. 14 조례 제16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사무관리규정

소관부처 : 행정자치부

제정	1991 · 6 · 19	대통령령 제13390호
개정	1993 · 3 · 6	대통령령 제13870호(상공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994 · 7 · 23	대통령령 제14339호(도서관 및 독서관 시설 허가령)
	1994 · 12 · 23	대통령령 제14438호(재정경제원과 그 소속기관 직제)
	1996 · 5 · 3	대통령령 제14989호
	1996 · 6 · 29	대통령령 제15063호(총무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1997 · 10 · 21	대통령령 제15498호(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1998 · 7 · 1	대통령령 제15823호
	1999 · 8 · 7	대통령령 제16521호
	1999 · 12 · 7	대통령령 제16609호(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1 · 1 · 29	대통령령 제17115호(교육인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01 · 2 · 14	대통령령 제17129호
	2001 · 6 · 30	대통령령 제17271호(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동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1 · 8 · 25	대통령령 제17344호(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이 영은 행정기관의 사무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무의  
간소화·표준화 및 과학화를 위하여 행정의 능률을 높임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적용범위) 중앙행정기관(대통령직속기관 및 국무총리직속기관을 포함한  
다. 이하 같다) 및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과 군의 기관(이하 "행정기  
관"이라 한다)의 사무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영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3 조 (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96 · 5 · 3, 99 ·  
8 · 7, 2001 · 2 · 14>

1. "공문서"라 함은 행정기관 내부 또는 상호간이나 대외적으로 공무상 작성 또는  
시행되는 문서(도면·사진·디스크·테이프·필름·슬라이드·전자문서등  
의 특수매체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행정기관이 접수한 모든 문서를  
말한다.
2. "문서과"라 함은 행정기관내의 공문서의 분류·배부·수발업무지원 및 보존  
등 문서에 관한 사무를 주관하는 과·담당관 또는 계를 말한다.
3. "처리과"라 함은 문서의 수발 및 사무처리를 주관하는 과·담당관 또는 계를

(주 136)

## 第4編 行政一般 第3章 文書·官印 사무관리규정

2. 대규모의 국책공사 기타 대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3. 주요 외교 및 통상협상의 내용
  4. 대통령령이상의 법령의 제정
  5.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제도
  6. 기타 정책자료집으로 만들어 보존할 필요가 있는 사항
- ②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정책자료집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배경
  2. 추진경과
  3. 계획에서부터 시행·완결까지에 관련된 다음 각목의 문서
    - 가. 계획서·보고서·추진계획표·일정표·심사분석결과등
    - 나. 관련자 및 관련자별 업무분담내용
    - 다. 공청회·세미나 및 관계자회의 기록
    - 라. 정책·사업등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하게 된 경위, 관련자 및 관련기록
- ③행정기관의 장은 제 1 항 및 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만든 정책자료집중 1부는 당해 기관에 보관하고, 1부는 정부기록보존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 1 항제 3호에 관한 정책자료집은 외교통상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에게 공개 한·해부터 정부기록보존소에 이관하여야 한다. <개정 99·12·7>
- ④정부기록보존소장은 제 3 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정책자료집을 영구보존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98·7·1)

제34조의4 (행정보도자료의 실명제공) 행정기관이 언론기관에 보도자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료에 담당부서·담당자·연락처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98·7·1)

## 제 3 장 관인관리

제35조 (종류 및 비치) ①관인은 행정기관의 명의로 발송 또는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청인과 행정기관의 장 또는 보조기관의 명의로 발송 또는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직인으로 구분한다.

②각급 행정기관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관인을 비치한다. <개정 98·7·1, 99·8·7>

1. 의결기관·자문기관 기타 합의제기관은 청인을 가지되, 자문기관은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가진다.
2. 제 1 호외의 기관은 그 기관장의 직인을 가진다.

(주 115)

## 第4編 行政一般 第3章 文書·官印 사무 관리 규정

3. 정부조직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기관이 위임받은 사무를 행정 기관으로서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사무처리를 위하여 직인을 가진다.
4. 합의제기관의 장은 법령에 의하여 합의제기관의 장으로서 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사무처리를 위하여 직인을 가질 수 있다.

제36조 (특수관인) ①각급 학교에서 사용하는 관인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군기 관에서 사용하는 관인은 국방부장관이, 검찰기관이 사용하는 관인은 법무부장관이, 외교통상부 및 재외공관에서 외교문서에 사용할 관인은 외교통상부장관이, 세입징수관·지출관·회계 기타 재무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직인은 재정경제부장관이 각각 그 규격·등록등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개정 94·12·23, 98·7·1, 2001·1·29>

②행정기관의 장은 유가증권 기타 특수한 증표발행에 필요한 관인과 민원업무등 특수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관인을 따로 가질 수 있다. <개정 99·8·7>

③각급 행정기관은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이미지관인을 가지며, 전자 이미지관인은 관인을 전자입력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신설 96·5·3, 99·8·7, 2001·2·14>

제37조 (규격) 관인의 모양은 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되, 그 크기는 별표 1의 규격을 초과할 수 없다.

(전문개정 99·8·7)

제38조 (등록) ①중앙행정기관의 관인은 행정자치부에, 기타 행정기관의 관인은 그 직근 상급기관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98·7·1, 99·8·7>

②관인은 등록하지 아니하면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 <신설 99·8·7>

제39조 (재등록 및 폐기) ①관인이 분실 또는 마멸되거나 간신히 필요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를 들어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관에 관인을 재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99·8·7>

②제1항 또는 기타의 사유로 관인을 폐기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관인의 등록 기관에 관인폐기신고를 한 후 이를 소각하거나 기타 적절한 방법으로 인영의 글씨를 알아 볼 수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기관이 폐지되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로 그 관인을 보존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이를 정부기록보존소에 이관하여 보존하거나 상급기관 기타 관계기관에 이관하여 보존할 수 있다. <개정 99·8·7>

③전자이미지관인을 사용하는 기관은 관인을 재등록한 경우 즉시 사용중인 전자

(추 129)

## 第4編 行政一般 第3章 文書·官印 사무관리규정

3. 정부조직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기관이 위임받은 사무를 행정 기관으로서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사무처리를 위하여 직인을 가진다.

4. 합의제기관의 장은 법령에 의하여 합의제기관의 장으로서 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사무처리를 위하여 직인을 가질 수 있다.

제36조 (특수관인) ①각급 학교에서 사용하는 관인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군기 관에서 사용하는 관인은 국방부장관이, 검찰기관이 사용하는 관인은 법무부장관이, 외교통상부 및 재외공관에서 외교문서에 사용할 관인은 외교통상부장관이, 세입징수관·지출관·회계 기타 재무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직인은 재정경제부장관이 각각 그 규격·등록등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개정 94.12.23, 98.7.1, 2001.1.29>

②행정기관의 장은 유가증권 기타 특수한 증표발행에 필요한 관인과 민원업무등 특수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관인을 따로 가질 수 있다. <개정 99.8.7>

③각급 행정기관은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이미지관인을 가지며, 전자 이미지관인은 관인을 전자입력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신설 96.5.3, 99.8.7, 2001.2.14>

제37조 (규격) 관인의 모양은 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되, 그 크기는 별표 1의 규격을 초과할 수 없다.

{전문개정 99.8.7}

제38조 (등록) ①중앙행정기관의 관인은 행정자치부에, 기타 행정기관의 관인은 그 직근 상급기관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98.7.1, 99.8.7>

②관인은 등록하지 아니하면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 <신설 99.8.7>

제39조 (제등록 및 폐기) ①관인이 분실 또는 마멸되거나 간신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를 들어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관에 관인을 재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99.8.7>

②제1항 또는 기타의 사유로 관인을 폐기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관인의 등록 기관에 관인폐기신고를 한 후 이를 소각하거나 기타 적절한 방법으로 인영의 글씨를 알아 볼 수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기관이 폐지되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로 그 관인을 보존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이를 정부기록보존소에 이관하여 보존하거나 상급기관 기타 관계기관에 이관하여 보존할 수 있다. <개정 99.8.7>

③전자이미지관인을 사용하는 기관은 관인을 재등록한 경우 즉시 사용중인 전자

(주 129)

## 第4編 行政一般 第3章 文書·官印 사무관리규정

이미지관인을 삭제하고, 재등록한 관인을 전자입력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신설 99.8.7, 2001.2.14>

제40조 (공고)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제외한다)을 등록 또는 재등록하거나 폐기 한 때에는 등록기관은 이를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99.8.7, 2001.2.14>

제41조 (공인) 지방자치단체의 공인에 관하여는 이 장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 4 장 보고사무

제42조 (보고의 심사) 행정기관이 다른 행정기관이나 공공단체·민간단체 또는 사업체(이하 "민간단체"라 한다)로부터 정기 또는 수시로 보고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이 장에 의한 심사(이하 "보고심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군사에 관한 보고심사에 관하여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96.5.3)

제43조 (보고심사대상) ①보고심사의 대상이 되는 보고는 다음과 같다. <개정 96.5.3, 99.8.7>

1. 중앙행정기관 또는 그 소속기관이 다른 행정기관으로부터 받는 보고
2. 자방자치단체가 다른 자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보고
3. 교육행정기관이 동급 또는 하급기관(각급 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부터 받는 보고
4. 삭제 <99.8.7>

②제 1 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보고심사를 받지 아니한다. <개정 96.5.3, 98.7.1, 99.8.7>

1. 법령의 해석 및 질의응답
2. 인원차출 및 표창상신
3. 유인물·책자 및 수령증등의 송부
4. 전문기관에 대한 화학적·물리적 시험의 의뢰
5. 각종 위원회 위원의 위촉에 따른 동의·조회 및 신원조회
6. 범죄수사 및 소송수행에 필요한 보고 또는 자료
7. 감사원법에 의한 회계검사 및 직무감찰에 관한 보고와 감사원의 실지감사 및 현지조사에 필요한 보고 또는 자료
8. 법령에 의한 관계기관간의 협의·동의 및 합의

(주 129)

## 양주군공인조례 개정

**개정구분** : 부분개정

**개정이유**

공인을 전자문서, 무인민원발급기 및 인증기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현행 운영하지 않는 불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함.

**주요골자**

- 가. 현재 운영하고 있지 않은 중계민원에 대한 사항을 삭제함(안 제2조제5항)
- 나. 전자문서, 인증기, 무인민원발급기에서도 적인을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안 제3조의2 및 제3조의3)
- 다. 전자문서에 사용하는 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6조의2)

**개정조례안** : 별첨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관계법령발췌서** : 별첨

- 사무관리규정

**관련사업계획서** : 해당없음

**예산수반사항** : 해당없음

**사전예고결과** : 해당없음

**기타 참고사항** : 해당없음